수료자의 연구등록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와 각종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료자의 연구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0. 11.)

제2조(등록자격)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3조(등록절차) 연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지정 된 기일 내 등록
2. 연구등록신청서를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3. 지정 된 장소에 연구등록금 납부

제4조(신분 부여 등)

1. 연구등록을 한 자는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2.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각종 연구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연구등록금) 학기당 연구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위청구논문발표 학기와 각종 연구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1. 인문사회계열: 120,000원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과: 150,000원

제6조(등록학기) 등록학기는 다음과 같다.

1. 학위청구논문발표 학기(단, 학위취득 시까지 1회만 등록)
2. 각종 연구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기

제7조(연구등록금 면제) 연구비 오천만원 이하, 연구기간 3개월 이내의 연구지원 사업과 무급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자 등은 연구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등록취소) ① 연구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등록금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한하여 전액 환불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금 상당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① 2014학년도 전에 입학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 신청 시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 2014학년도 전에 각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 7월 까지 종료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등록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2.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